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039호, 2025. 8. 26. 공포, 2026. 8. 27. 시행)됨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,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4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“공원녹지기본계획”을 “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3조의2,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전국 공원·녹지의 미래전망
2. 국가도시공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단계별 추진 전략
3.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
4.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0조의4(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(이하 “중앙도시공원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예산처, 행정안전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2. 도시공원, 조경, 도시계획, 환경, 생태, 경관, 문화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50조의5(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대표하며,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

소집한다.

⑤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

⑦ 그 밖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별표 1의2를 삭제하고,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

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신청 시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즉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)	제3조(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)
①법 제4조제4호에서 “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	①법 제4조제1항제5호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장 <u>공원녹지기본계획</u>	제2장 <u>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</u> 등
<신 설>	제3조의2(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	1. <u>전국 공원·녹지의 미래전망</u>
	2. <u>국가도시공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단계별 추진 전략</u>
	3. <u>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</u>
	4. <u>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</u>
	5. <u>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
<신 설>

제50조의4(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

구성)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
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(이하
“중앙도시공원위원회”라 한다)
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을
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
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
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
된다.

1. 기획예산처, 행정안전부, 기
후에너지환경부, 국토교통부
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
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
지명하는 사람

2. 도시공원, 조경, 도시계획, 환
경, 생태, 경관, 문화 등 공원
녹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
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
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
는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
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

<신 설>

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
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
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서무
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
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와
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
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50조의5(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

운영)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공
원위원회를 대표하며, 중앙도시
공원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
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
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
를 대행한다.

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
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
때에 소집한다.

⑤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
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
개 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

⑦ 그 밖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51